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49호

**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서초로 지구단위계획)
결정(변경)·지형도면 고시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- 명 칭 :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
- 면 적 : 1,167.9㎡

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2년 11월 17일

3. 사업의 종류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
- 명 칭 : 교대역1번피에프브이 주식회사
- 대표자 성명 : 박인흠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13, 2층(서초동)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590361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및 주소

가.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용도지역 및 지구	소유자 및 관계인			비고
	행정동	지번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	성명	주소	지분	
1	서초동	1676	4 대	834	834	일반상업지역	[위탁자] 교대역1번 피에프브이 주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서초대로 58길 13. 2층(서초동)	100.0	-
2	서초동	1676	5 대	333.9	333.9	일반상업지역	[수탁자]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)		
합계				1,167.9	1,167.9					

나.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규모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연면적 (㎡)	층수 (지 하/ 지 상)	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 종류 및 내용	
1	서초동	1676	4 대	건물 (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주택)	철근 콘크리트조	3,151.19	3/5	[위탁자] 교대역1번 피에프브이 주식회사	-	-	-	-
2	서초동	1676	5 대	건물 (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위탁시설)	철근 콘크리트조	1,244.64	1/7	[수탁자]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			
합계						4,395.83			-			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역~ 강남역	596,277 (1,167.9㎡)	-	596,277 (1,167.9㎡)	-

※ () 안의 면적은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면적임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(☎02-2133-6291) 및 서초구청 건축과(☎02-2155-685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

- 명 칭 :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
- 면 적 : 1,167.9㎡
-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: 교대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·사회초년생·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
- 명 칭 : 교대역1번피에프브이 주식회사
- 대표자 성명 : 박인흠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13, 2층(서초동)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7590361

3.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

-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5년
- 재원조달계획 : 자기자본(사업비 일부), PF대출(공사비 등)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주택건설용지	1,167.9	100.0	임대주택
합 계	1,167.9	100.0	-

※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가. 수용인구 : 약 312인

나. 주택건설계획 : 252세대

구 분	세대수(세대)	비 율(%)	수용인구(인)	비 율(%)	비 고
공공 임대주택	20.19㎡	2	0.79%	2	0.64%
	20.24㎡	2	0.79%	2	0.64%
	20.37㎡	2	0.79%	2	0.64%
	20.39㎡	1	0.40%	1	0.32%
	20.47㎡	2	0.79%	2	0.64%
	20.53㎡	2	0.79%	2	0.64%
	25.72㎡	3	1.19%	3	0.96%
	41.46㎡	4	1.59%	10.6	3.40%
					역세권 청년주택 건설·공급

구 분	세대수(세대)	비 율(%)	수용인구(인)	비 율(%)	비 고
45.37㎡	3	1.19%	7.95	2.55%	
소 계	21	8.33%	32.55	10.45%	
SH 선매입	20.19㎡	12	4.76%	12	3.85%
	20.24㎡	2	0.79%	2	0.64%
	20.37㎡	2	0.79%	2	0.64%
	20.39㎡	8	3.17%	8	2.57%
	20.47㎡	9	3.57%	9	2.89%
	20.53㎡	9	3.57%	9	2.89%
	소 계	42	16.67%	42	13.49%
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	20.19㎡	58	23.02%	58	18.63%
	20.24㎡	14	5.56%	14	4.50%
	20.37㎡	14	5.56%	14	4.50%
	20.39㎡	9	3.57%	9	2.89%
	20.47㎡	43	17.06%	43	13.81%
	20.53㎡	7	2.78%	7	2.25%
	25.72㎡	15	5.95%	15	4.82%
	41.46㎡	14	5.56%	37.1	11.91%
	45.37㎡	15	5.95%	39.75	12.76%
	소 계	189	75.00%	236.85	76.06%
합 계	252	100.00%	311.4	100.00%	

※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의 「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」을 적용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가. 환경보전계획

1)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

-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의 순환기능)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) 조성, 생태면적을 확대를 위해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
- 대상지 내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어 주변지역의 조경수목에 의한 녹지의 연결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, 단지 내 주차 수요를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하는 등 지상부에 조경녹지,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

2) 환경오염 저감계획

-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성상별, 종류별로 분리하고, 서울특별시 및 서초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며,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·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

나. 탄소저감계획

-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, 옥상녹화 등) 하고,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

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.

-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,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
-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
- 운영 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.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

- 이하 없음 -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역~ 강남역	596,277 (1,167.9㎡)	-	596,277 (1,167.9㎡)	-

※ () 안의 면적은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면적임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: 첨부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) 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) 획지 결정조서

■ 최대개발규모(변경없음)

■ 공동개발(변경)

구 분	가구번호	지번		면적(㎡)	계획내용	비고
기 정	GC-16	서초동	1676-1~3	657.0	공동개발 권장	
		서초동	1676-4~6	1,532.8	1676-4, -5, -6 공동개발 권장	
변 경	GC-16	서초동	1676-1~3	657.0	공동개발 권장	
		서초동	1676-4, -5	1,167.9	공동개발(지정)	역세권 청년주택
		서초동	1676-6	364.9	단독개발	

- 결정사유서

도면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1676-4, -5번지 공동개발 지정하여, 1676-6번지 단독개발	•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

2)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	기 정	변 경	비고
지정 용도	a	-	•공동주택(주거복합)주1) ※ 단,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	서초동 1676-4번지 일원에 한함
권장 용도	이면 부 3	특정층 (1층~2층 또는 지하층) •판매시설 중 상점(상업지역에 한함) •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•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, 공연장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- 공연장(영화관, 비디오물 감상실, 비디오물 소극장 제외) - 전시장	(좌동)	
불허 용도	전구역	•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과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	(좌동)	
	B-1(주2)	-	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•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과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관람장 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•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•위락 시설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•자원순환관련시설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발전시설 •장례시설 •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•교정 및 군사시설 •묘지관련시설 •야영장시설	서초동 1676-4번지 일원에 한함

주1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

주2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서 설치 불가능한 시설의 종류

- 결정사유서

도면번호	변경내용	결정사유
-	•지정용도, 불허용도 신설	•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건립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용도로 결정 •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

나)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

■ 건폐율(변경없음)

구분	건폐율	비고
기정	일반상업지역	•60% 이하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4조 준수

■ 용적률(변경)

구분	적용구역		계획내용			비고
		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
기정	일반 상업지역	상향지역 ('99)	300% 이하	630% 이하	허용용적률× (1+1.3×가중치×α토지+0.7 ×α건축물)	
변경	서초동 1676-4번지 일원		기본용적률 1,000% 이하		법적용적률 이하	•서초구 서초동 1676-4번지 일원에 한함

※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: 완화용적률(상한용적률-기본용적률)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

■ 건축물 높이(변경)

구분	적용구역		높이		비고
			기준높이	최고높이	
기정	일반상업지역	이면부	40m 이하	50m 이하	
변경	서초동 1676-4번지 일원		-	72m 이하	•서초동 1676-4번지 일원에 한함

－ 결정사유서

도면번호	변경내용	결정사유
-	•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결정	•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따른 개발밀도계획 결정

다)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 사항)

구분	적용기준		계획내용			비고
공공기여율	•부지면적 기준 14% 이상 (163.51㎡)	공공시설 (지상3층)	•공공시설등 제공면적 : 61.71㎡(5.28%) - 환산부지 : 29.40㎡ - 토지지분 : 32.31㎡	부속토지 기준 164.87㎡ (14.11%)	총 252세대 중 21세대 공공기여 (세대수 기준 8.33%)	기본 용적률 1,000% /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
		공공임대주택	•기본공공기여 : 103.16㎡(8.83%) - 공공임대주택 : 21세대			
	•완화용적률의 50%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		•추가공공기여 : -			
비주거비율	•10% 이상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	•주거 : 비주거 = 88.33% : 11.67%			

표 계속 ↓

구분		적용기준	계획내용	비고
주택 건설 기준	주택 규모	•전용면적 : 18㎡~60㎡ 내외 - 1인 세대 규모 : 전용 18㎡ 이상 - 2인 이상 규모 : 전용 36㎡ 이상	•공공임대주택 : 21세대 - 20.19㎡ : 2세대 / 20.24㎡ : 2세대 - 20.37㎡ : 2세대 / 20.39㎡ : 1세대 - 20.47㎡ : 2세대 / 20.53㎡ : 2세대 - 25.72㎡ : 3세대 / 41.46㎡ : 4세대 - 45.37㎡ : 3세대 •SH공사 선매입 임대주택 : 42세대 - 20.19㎡ : 12세대 / 20.24㎡ : 2세대 - 20.37㎡ : 2세대 / 20.39㎡ : 8세대 - 20.47㎡ : 9세대 / 20.53㎡ : 9세대 •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189세대 - 20.19㎡ : 58세대 / 20.24㎡ : 14세대 - 20.37㎡ : 14세대 / 20.39㎡ : 9세대 - 20.47㎡ : 43세대 / 20.53㎡ : 7세대 - 25.72㎡ : 15세대 / 41.46㎡ : 14세대 - 45.37㎡ : 15세대	기본 용적률 1,000% /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
건축물 형태		•2가지 이상 의무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-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- 에너지 효율 건축물 - 친환경 건축물 - 공공시설물 설치 - 「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	•에너지 효율 건축물 •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	
주민공동시설 (커뮤니티시설)		•「청년주택 운영기준」 3-3-9 - 100세대 이상 ~ 300세대 미만 : 150㎡ 이상	•171.50㎡ 계획(지상 3층)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적용

※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,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~지상3층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

－ 결정사유서

도면번호	변경사유
-	•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을 적용함

라)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적용방향	적용대상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교차로 가각부, 지하철입구 주변의 전면공지 확보, 이면도로의 확폭	이면부	도로중심선 및 도로경계선에서 1.5~6m	서초로 지구단위계획

※ <기결정사항> 사업대상지 : 서초중앙로22길변(남측8m도로) - 도로경계선에서 2m/서초대로58길(서측6m)도로, 서초대로60길변(동측6m도로) - 도로경계선에서 1.5m

3)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가) 교통처리 계획 (변경)

구분		적용목표	적용대상	비고
기정	보차혼용도로 (규제)	•획지로의 원활한 주차도로 및 보행편의성 제고	•도로의 접근이 어려운 획지	-
변경	보차혼용도로 → 공공보행도로 (규제)	•블록내 보행연계성 확보 및 보행편의성 제고	•서초동 1676-4, -5번지	-

-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변경	•1676-4, -5번지에 한해 보차혼용도로를 공공보행도로로 변경	•블록 내 보행연계성 확보 및 보행편의성 제고

나) 공공기여 계획

구 분	용적률	공공기여 기준	계획내용	비고
공공 임대 주택	기본용적률 (1,000% 이하)	•부지면적 기준 14% 이상 (163.51㎡ 이상)	•부지면적 기준 : 103.16㎡(8.83%) (21세대)	총 252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21세대 계획 ※SH선매입 42세대
공공 시설			•부지면적 기준 : 61.71㎡(5.28%)	지상3층 자원봉사센터 (서초구 요청시설)

※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공공임대주택 부족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

※ 공공시설(건축물) 등의 공공기여율은 기본용적률 적용에 따른 기본공공기여에 반영하고 토지지분과 건축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합산 적용함

※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3. 방재계획

가. 호우재해

-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
-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, 가배수로,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
-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(지하저류조), 침투시설(옥상녹화, 투수포장 등)을 계획

나. 지진재해

-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,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
-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가.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용도지역 및 지구	소유자 및 관계인			비고
	행정동	지번		공부 면적	편입 면적		성명	주소	지분	
1	서초동	1676	4 대	834	834	일반상업지역	[위탁자] 교대역1번 피에프브이 주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서초대로 58길 13. 2층(서초동)	100.0	-
2	서초동	1676	5 대	333.9	333.9	일반상업지역	[수탁자]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)		
합계				1,167.9	1,167.9					

나.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규모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연면적 (㎡)	층수 (지하/ 지상)	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 종류 및 내용	
1	서초동	1676	4 대	건물 (업무시설)	철근 콘크리트조	3,151.19	3/5	[위탁자] 교대역1번 피에프브이 주식회사	-	-	-	-
2	서초동	1676	5 대	건물 (업무시설)	철근 콘크리트조	1,244.64	1/7	[수탁자]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-	-	-	-
합계						4,395.83			-			

다. 토지취득방법 : 사업시행자 100% 확보 후 신탁

라.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사업부지내 건축물,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
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

가. 공공시설의 종류, 위치 및 규모

구분	위치	시설규모		비고
		위치	연면적	
서초구 자원봉사센터	서초동 1676-4 일원	지상3층	393.68㎡	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

※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(시설·운영계획 등)은 향후 서초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

※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나. 공공시설의 종류, 위치 및 규모

■ 공공기여 내용

: 공공시설등 조성 후 관리청(서초구청)에 기부채납

■ 세부기준

: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,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」 등 준용
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「건축법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서초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
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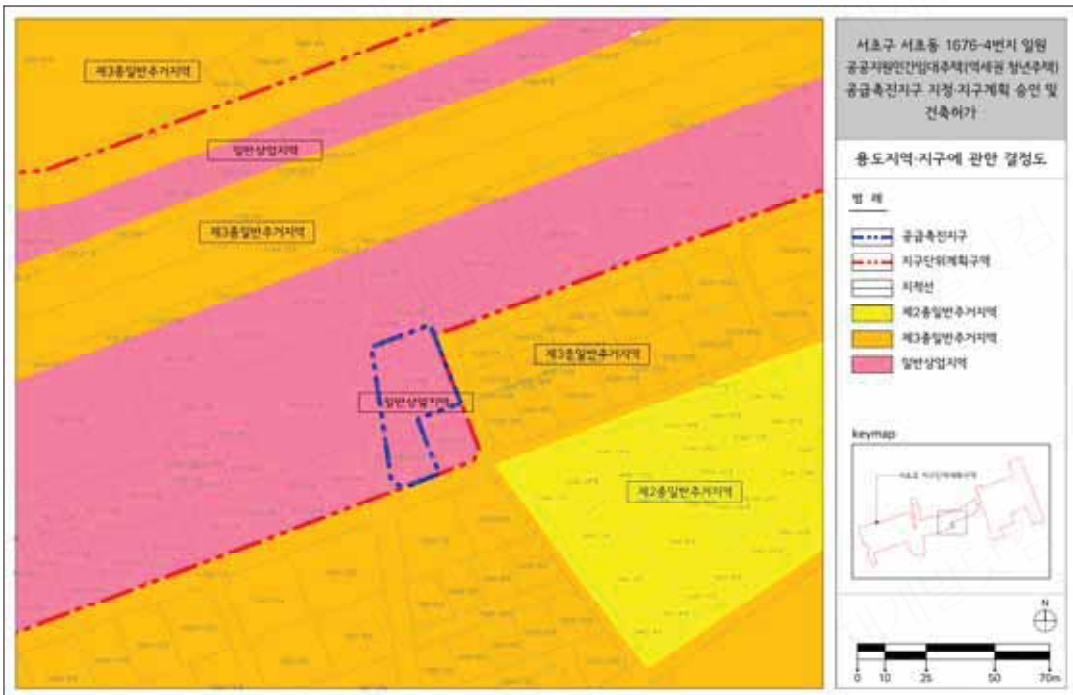
구분	공급토지		공급대상자	공급시기	비고
	면적(㎡)	구성비(%)			
합계	1,167.9	100.0	-	-	-
주택건설용지	1,167.9	100.0	자체사용	승인 후	-

III. 관계도면

〈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〉



〈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〉



<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>



〈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기정)〉



〈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(변경)〉

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3016호

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서울특별시

1.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

연번	등록번호	등록일자	상 호 대 표 자 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영업소 소재지
1	203719	22.11.3.	주식회사 스마트정보기술 박성애 110111-7133989	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96, 1층 3호(면목동)

2. 근거법령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(공사업의 등록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공사업등록의 신청 등)

3. 내용문의 :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)2133-2880